

서울특별시 강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민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2-100
----------	----------

발의연월일 : 2022. 10. 6.

발의자 : 김민석, 고찬양, 김현진,
김성한, 전철규, 이종숙,
박학용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스포츠클럽법」(시행 2022. 6. 16. / 제정 2021. 6. 15.) 시행에 따라 스포츠클럽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스포츠클럽의 육성과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체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보조금 지원에 대한 회계관리 책임, 지도·감독 및 환수 규정 마련
(안 제5조, 제6조,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스포츠클럽법」 제3조,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

나. 협조부서 : 문화체육과

다. 입법예고 : 2022. 10. 6. ~ 2022. 10. 12.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공공체육시설”이란 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시설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 및 범위)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시책을 수

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공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공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공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

④ 지정스포츠클럽에 공공체육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⑤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4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회계관리)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도·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환수)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도·감독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스포츠클럽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 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시책을 수립하고 스포츠클럽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스포츠클럽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정스포츠클럽: 사용료의 100분의 100 이하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 사용료의 100분의 80 이하